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 참여 확대, 반려동물 교육·문화·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반려동물 정책 수립 시 시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화

(안 제4조)

-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안 제12조)
- 반려동물 생명존중과 반려인 의무에 대한 교육·홍보 규정 신설(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3월 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1, · 팩 스 : 031)3036-8953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기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 제2조제1의3호”를 “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위탁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9.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10.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유기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보호·문화조성·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인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6.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반려문화 조성)”을“(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1조”를 “법 제90조”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5조”로,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기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반려문화사업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문화·휴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및 입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반려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반려동물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반려인등의 의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u>”이란 <u>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u> 3. “<u>소유자 등</u>”이란 <u>법 제2조제3호</u>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4. “<u>등록대상동물</u>”이란 <u>법 제2조제2호</u>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5. “<u>보호조치</u>”란 <u>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u> 6. “<u>동물보호센터</u>”란 <u>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u>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유실·유기동물</u>”이란 <u>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u> 3. ----- <u>법 제2조제2호</u>-----. 4. ----- <u>법 제2조제8호</u>-----. 5. ----- <u>유실·유기동물</u>----- ----- ----- ----- -----. 6. “<u>동물보호센터</u>”란 <u>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위탁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u>

7. (생 략)

8.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의3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복지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7. (현행과 같음)

8. ----- 법 제2조제7호-----.

9.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10.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
----- 유실·유기동물-----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반려문화 조성)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2.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보호·문화조성·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인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6.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생 략)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생 략)

④ ~ ⑨ (생 략)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제6조 -----

3. 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

4.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지원) -

--- 법 제15조제1항-----

-----.

제9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 법 제35조-----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11조(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반려동물 입양센터(이하 “입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 법 제36조-----
-----.

②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 유실·유기동물-----
-----.

제12조(반려문화사업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문화·휴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4.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및 입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3조(반려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반려동물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반려인등의 의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